

제 호

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:

3. 주 소:

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미래창조과학부장관

직인